

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형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74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5.

발 의 자 : 박형수 · 조배숙 · 김대식
임종득 · 구자근 · 고동진
유상범 · 서일준 · 강승규
이만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엔지니어링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적·체계적으로 육성하고, 산업간 연계·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국가 경쟁력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.

동 법에 따라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적정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,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대가에 반영하여야 함.

그러나, 발전 설비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발주청의 적정대가 지급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입 가입 등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에 운전 및 정비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.

또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금융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제사고 발생 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플랜트 시설물 등에서 수행중인 엔지니어링업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“운전”, “안전점검, 안전진단”, “정비”를 엔지니어링활동에 추가함(안 제2조).
- 나.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(안 제31조).
- 다. 공제조합의 충분한 지급능력 및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결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5조의2 신설).
- 라. 보증사고 시 공제조합이 사업현장에 출입하여 진행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, 그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전문기관 등을 통해 사고조사를 대행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35조의3 신설).

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가목 중 “시험운전”을 “운전”으로, “안전성 검토”를 “안전성 검토, 안전점검, 안전진단”으로, “유지 또는 보수”를 “유지·보수(정비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31조제3항 중 “재산상의 손해”를 “손해”로 한다.

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책임준비금 등의 적립) ①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공제 및 보증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5조의3(사업현장에 대한 지도 등) ①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보증한 사업현장에 출입하여 진행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, 그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현장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엔지니어링기술 및 연관산업분야의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손해사정을 전문으로 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엔지니어링활동”이란 과학 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.	1. ----- ----- -----.
가. 연구, 기획, 타당성 조사, 설계, 분석, 계약, 구매, 조달, 시험, 감리, <u>시험운전</u> , 평가, 검사, <u>안전성 검토</u> , 관리, 매뉴얼 작성, 자문, 지도, <u>유지 또는 보수</u>	가. ----- ----- ----- <u>운전</u> ----- ----- <u>안전성 검토</u> , <u>안전점검, 안전진단</u> ----- ----- <u>유지 · 보수(정비를 포함한다)</u>
나. · 다. (생략)	나. · 다. (현행과 같음)
2. ~ 7. (생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
제31조(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) ① · ② (생략)	제31조(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<u>재산상의 손해</u> 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손해</u> ----- -----.
④ · ⑤ (생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제35조의2(책임준비금 등의 적립)</u>

<신 설>

①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공제 및 보증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5조의3(사업현장에 대한 지도

등) ①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보증한 사업현장에 출입하여 진행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, 그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현장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엔지니어링기술 및 연관산업분야의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손해사정을 전문으로 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